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525
-----------	-----

2015년 6월 29일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5년 6월 29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김희선)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2015.1.20.)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심의회를 폐지함과 아울러 영구시설물 축조시 미리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고자 함.
- 또한 입법 불비 사항인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정 방법과 지상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방법 등을 구

체화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 사전 승인 또는 동의규정 신설
(안 제3조제2항부터 제3항 신설)

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미리 승인받도록 함.

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비(안 제4조제1항부터 제8항 개정)

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인원, 위원 임명, 위원 임기, 제척·회피 등을 규정함.

3) 상위법 및 시행령 조항 변경에 맞게 조례 조항 수정(안 제5조제2항제1호,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제4항·제5항, 제46조)

4) 실태조사시 조사항목 신설(안 제8조제2항제6의2호 신설)

가) 불법무단 사용 여부 신설

5)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일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및 대부료 신설
(안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제22조 개정, 제26조제8항, 제27조제3항제6호)

- 가)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내지 않고 주거용 등 사적용도 사용금지
 - 나) 행정재산의 시간별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출방법 규정
 - 다) 지상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규정 신설
- 6)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의2)
- 가) 구성인원, 위원 임명 및 임기, 운영 사항 규정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525호로 제출되어 201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¹⁾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를 폐지하고, 영구시설물 축조시 받아야 하는 승인 절차를 신설하며, 대부료 산정방법 등을 구체화함과 아울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1)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7호, 2015.1.20., 일부개정]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정하여 별도의 구조물과 영구축조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²⁾).

-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는 교육청이 이러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구시설물 축조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한 것은 단위학교에서 특정 단체나 업체와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설관리상의 위험 및 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 일관성 있고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시설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안 제3조제3항에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 다음으로 안 제4조는 2015년 7월 21일 시행예정인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³⁾.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 법령 사항 중 조례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보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입법효율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법 제16조제3항제3호가 민간위원을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신분 및 임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자격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민간위원을 어떤 기준과 어느 정도의 임기로 선발할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안 제8조(실태조사)

- 공유재산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70건의 교육청 일반재산이 무단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 상태에 있음이 지적되었고, 그 중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재산도 9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제6의2호와 같이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불법무단 사용 여부’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표-1]시·도교육청별 무단점유된 것으로 확인된 일반재산의 무단점유 기간(추정)

(단위: 건)

교육청명	무단점유 기간					계
	5년 이하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15년 이하	15년 초과~20년 이하	20년 초과	
전라북도	33	2				35
경기도	1	2		1	7	11
서울		3	1	1	4	9
충청남도	2	5			1	8
경상북도		3				3
충청북도			2			2
전라남도	1					1
강원도	1					1
계	38	15	3	2	12	70

출처 :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서(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1208(2015.3.11.)호)

4) 안 제18조(사용·수익허가)

○ 동 개정조례안 제18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법, 영 및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내지 않고는 주거용등 사적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6조를 따라 규정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내실있는 관리측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특히 지난 2014년 6월 9일부터 15일부터 있었던 감사원 감사결과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비사용 관사들을 주거용 또는 사적용도로 불법 사용함으로써⁴⁾ 서울시의회의 시정요구가 있었던 바 금번 조례 개정에 이를 반영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⁵⁾

5) 안 제20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 안 제20조는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의 근거만을 명시했던 종전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그 사용료까지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급학교의 시설 사용료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직속기관 중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의 시설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⁶⁾ 등 직속기관은 자체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안 제20조제1항과 제2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안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동 개정안 제27조는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6호로 지상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삼각산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 햇빛발전소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지상건물 옥상의 대부사항을 신설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4) 「감사결과에 따른 교직원 관사관리 유의사항 안내」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1225(2015.3.11.)

5) 2010년 11월 22일 교육위원회 회의록 참고.

6)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시설물대관 및 사용료징수 규정」 참고.

-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경우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건물의 일부 중 옥상을 대부할 경우의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안 제27조제3항제6호 각 목의 특성에 맞게 산출하는 바 그 산출근거는 제27조제3항 각 호 및 각 목에 따라 각 층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규정한 것으로⁷⁾ 요율 산정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안 제38조의2(수탁기관선정위원회)

- 동 개정조례안 제38조의2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⁸⁾
- 동 개정조례를 통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의 선정과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8조의2와 같이 동 위원회의 위원을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30명 이내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8)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바, 구성위원을 모두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⁹⁾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공유재산심의회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인 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자산관리과의 위탁관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및 주사가 된다.

⑥ 심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25
----------	-----------

제안년월일 : 2015년 06월 29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부합하도록 하고, 안 제38조의2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규정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규정함(안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제6항에 따른 위원의 회피 신청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며, 민간 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하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공무원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제출안	수정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자문하기 위하여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각각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1. 본청 심의회는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의 과장 및 담당관 중에서 교육감이</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p> <p>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p> <p>2.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제출안과 같음)</p> <p>1. (제출안과 같음)</p> <p>2. (제출안과 같음)</p> <p>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p> <p>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했던 자</p> <p>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임명한다.</p> <p>2. <u>지역교육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복지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u></p> <p>③ <u>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③ <u>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④ <u>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⑤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p> <p>1. <u>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u></p> <p>⑥ <u>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⑦ <u>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제6항에 따른 위원회 회피 신청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u></p> <p>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제출안과 같음)</p> <p>⑤ (제출안과 같음)</p> <p>⑥ (제출안과 같음)</p> <p>⑦ (제출안과 같음)</p> <p>⑧ (제출안과 같음)</p> <p>⑨ (제출안과 같음)</p>
---	--	---

<p><신 설></p>	<p>제38조의2(수탁기관선정위원회)</p> <p>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p> <p>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p> <p>2.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p>	<p>제38조의2(수탁기관선정위원회)</p> <p>① (제출안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③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하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p>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p> <p>2.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공무원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⑤ (제출안과 같음)</p>
--------------------	---	--

	<p>를 대행한다.</p> <p>⑤ <u>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⑥ <u>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⑥ (제출안과 같음)</p> <p>⑦ (제출안과 같음)</p>
--	--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 하고, “취득 및 처분 등” 을 “관리 및 처분” 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장
2.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감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또는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제6항에 따른 위원의 회피 신청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제목 중 “공유재산심의회” 를 “심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공유재산심의회” 를 “심의회”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내용 중 “제2항” 을 “제3항”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을 “영” 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불법무단 사용 여부

제14조제2항 본문 중 “동” 을 “그” 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수의계약” 을 “수의의 방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법·영 및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내지 않고는 주거용 등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제목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1. 시간별로 사용허가 할 때의 사용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4시간 까지 : 사용료의 50퍼센트

나. 4시간 초과 8시간까지 : 사용료의 100퍼센트

2. 사용시간이 9시 이전이거나 18시 이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산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의 기관이외의 기관은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 을 “제4항 및 제5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항” 을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 을 “제6항” 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일시 사용허가” 를 삭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제8항은 제외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을 위하여 설치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제2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일반재산을 일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상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3층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8분의 1

라. 4층 이상의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10분의 1

제27조제4항 본문 중 “%” 를 “퍼센트” 로 한다.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내용 중 “%” 를 “퍼센트” 로 한다.

제30조 제목 중 “에 관한 특례” 를 “의 조정” 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부료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나.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가. 50만원 이하: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다. 1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제31조의 제5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내용 중 “%” 를 “퍼센트” 로 한다.

제35조 본문 앞에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를 삽입하고, “잔액의 연 3%” 를 “잔액에 연 3퍼센트” 로 한다.

제36조제4호 중 “%” 를 “퍼센트” 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며, 민간 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하되 과반수

가 되어야 한다.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공무원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이상”을 “초과”로 한다.

-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상금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본문 중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영 제11조의3제1항·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 일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및 옥상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

례 시행 후 접수된 일시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건물대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폐지 및 위원의 임기 만료)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2015년 7월 2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본청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015년 7월20일자로 만료된다.

제5조(영구시설물 축조 사전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장 총칙</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u>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 소재지 소속 기관장에게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1장 총칙</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u>교육감은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소재지 소속 기관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u></p> <p>②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장 2.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감 <p>③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u>」에 따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미리 「<u>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p>

현행	개정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p> <p>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자문하기 위하여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각각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p>	<p>를 받아야 한다.</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p> <p>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p>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p>

현행	개정안
<p>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1.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의 과장 및 담당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p> <p>2. 지역교육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복지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p> <p>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p> <p>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6.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공유재산심의회</u>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 ~ 5. (생략)</p> <p>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p>	<p><u>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⑧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제6항에 따른 위원의 회피 신청으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 ----- 1. ~ 6. (현행과 같음)</p> <p>②----- ----- ----<u>심의회</u>----- ----- 1. -----<u>제3항</u>----- ----- 2.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 -----<u>영</u>----- ----- ----- -----</p>

현행	개정안
<p>제20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사용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수 또는 횟수별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수 또는 횟수별로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p>	<p>에 의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내지 않고는 주거용 등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p> <p>제20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①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간별로 사용허가 할 때의 사용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4시간 까지 : 사용료의 50퍼센트 나. 4시간 초과 8시간까지 : 사용료의 100퍼센트 2. 사용시간이 9시 이전이거나 18시 이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산한다. <p>② 제1항 단서 규정의 기관이외의 기관은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p>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현행	개정안
<p>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일반경쟁 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 ----- -----제4항 및 제5항-----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6항----- ----- ----- ----- -----</p> <p>⑤ ----- ----- 제6항 ----- -----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u>일시사용허가</u>,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p>	<p>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사용료 요율, 전세금의 ----- ----- ----- ----- ----- -----</p> <p>----. <u>다만, 제26조제8항은 제외한다.</u></p>
제4장 일반재산	제4장 일반재산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대부</p> <p>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u>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u></p> <p>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⑦ (생략) <신설></p> <p>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③ 1. ~ 5. (생략)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대부</p> <p>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u>이 조례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을 위하여 설치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p>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일반재산을 일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20조를 준용한다.</u></p> <p>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③ 1. ~ 5. (현행과 같음) 6. <u>지상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u> 가. 1층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3층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8</p>

현행	개정안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를 감면할 수 있다.</p> <p>가. ~ 나. (생략)</p> <p>다.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 이상 100%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p> <p>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 이상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 바. (생략)</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p> <p>가. ~ 나. (생략)</p> <p>다.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 이상 75%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p> <p>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 사. (생략)</p>	<p>2. ----- -----퍼센트-----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퍼센트----- ----- -----퍼센트-----퍼센트----- -----</p> <p>라. ----- -----퍼센트-----퍼센트----- -----</p> <p>마. ~ 바. (현행과 같음)</p> <p>3. ----- -----퍼센트-----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 퍼센트 ----- ----- -----퍼센트----- ----- 퍼센트 ----- -----</p> <p>라. ----- -----퍼센트-----퍼센트----- -----</p> <p>마. ~ 사. (현행과 같음)</p>
<p>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생략)</p>	<p>제30조(대부료 등의 조정)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31조(대부료의 납기)</p> <p>① (생략)</p> <p>② <u>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p> <p>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p> <p>③·④ (생략)</p> <p>⑤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50만원 이하: 3개월 이내 2회</p>	<p>제31조(대부료의 납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부료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1. <u>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u></p> <p>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p> <p>나.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p> <p>2.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부하는 경우</u></p> <p>가. 50만원 이하: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p> <p>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p> <p>다. 1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행	개정안
<p>범위에서 분할납부</p> <p>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p> <p>3. 1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p>	
<p>제2절 매각</p>	<p>제2절 매각</p>
<p>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p> <p>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p> <p>-----</p> <p>-----</p> <p>-----</p> <p>-----퍼센트-----</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퍼센트-----</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퍼센트-----</p> <p>-----</p>

현행	개정안
<p>제35조(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과 교환할 경우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 잔액의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35조(교환차금의 분납) 영 제45조 제1항에 따라 ----- ----- ----- -----에 연 3퍼센트 --- -----</p>
<p>제36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일단의 토지가 300제곱미터 이하(단,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교육감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5. ~ 6. (생략) 	<p>제36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현행과 같음) 4. ----- ----- ----- ----- ----- -----퍼센트 ----- 5. ~ 6. (현행과 같음)
<p>제3절 신탁 및 위탁</p>	<p>제3절 신탁 및 위탁</p>
<p>제38조(일반재산 관리·처분 등의 위탁) (생략)</p>	<p>제38조(일반재산 관리·처분 등의 위탁)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38조의2(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p>

현행	개정안
	<p><u>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u></p> <p><u>③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하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u></p> <p><u>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u></p> <p><u>2.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공무원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u></p> <p><u>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u>⑤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u></p>

현행	개정안
<p>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u></p>	<p>-----<u>감정평가업자에게</u>-----</p>
<p>제47조(이자) 영 제11조의3제1항·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에 따라 이 조례의 각종 대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로 한다.</p>	<p>제47조(이자) 영 제11조의3제1항·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p>
<p>제48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질의회신·지침·편람 등)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p>	<p><삭제></p>
<p>제49조(시행규칙)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4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정재산 일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및 옥상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p>

현행	개정안
	<p><u>제1항 및 제27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접수된 일시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건물대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u></p> <p><u>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폐지 및 위원의 임기 만료)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2015년 7월 2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u></p> <p><u>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본청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015년 7월20일자로 만료된다.</u></p> <p><u>제4조(영구시설물 축조 사전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u></p>